

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에
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
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
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
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
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
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 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
 삼성KODEX은행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
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형[주식] 집합투자기구
 다. 보관 · 관리기간: 2010.06.26 - 2011.06.25
 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(주)
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교보증권,
 신한금융투자, 한국투자증권, 대신증권, 대우증권,
 메리츠종합금융증권, 우리투자증권, 현대증권,
 에이치엠씨투자증권, 동양종합금융증권, SK증권,
 삼성증권, 케이비투자증권, 크레디트스위스증권,
 하이투자증권, 미래에셋증권

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| 변경 일자 | 변경 사유 | 주요 변경내용 | |
|------------|--|--|--|
| | | 변경전 | 변경후 |
| 2010.08.26 | 제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) 제38조(투자신탁) 제41조(투자신탁분배금 지급) | 이 투자신탁은 삼성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. ① 생략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제 41 조의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(이하 “분배금 지급기준일”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산출하되, 구체적인 보수계산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출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일로 한다. 1. ~ 3. 생략 ③ ~ ⑤ 생략 | 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신탁업자로 한다. ① 생략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(이하 “보수계산기간”이라 한다)은 제41조의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(단, 회계기간 말일의 익영업일을 제외하며, 이하 “분배금 지급기준일”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산출하되, 구체적인 보수계산기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출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일로 한다. 1. ~ 3. 생략 ③ ~ ⑤ 생략 |
| | 제41조(투자신탁분배금 지급) |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3 영업일전까지 |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|

| | |
|--|---|
|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. | 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. |
| 1. 지급기준일: 1 월, 4 월, 7 월, 10 월 마지막일 | 1. 지급기준일: 1월, 4월, 7월, 10월 마지막일 및 회계기간 말일의 익영업일 |
| 2. ~ 4. 생략 ② ~ ③ 생략 | 2. ~ 4. 생략 ② ~ ③ 생략 |
| ④ 집합투자업자가 이익분배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분배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이익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제 23 조제 1 항제 3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“ 零 ”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| ④ 집합투자업자가 이익분배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분배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이익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제 23 조제 1 항제 3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“ 零 ”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 |
| 1. 법 제 234 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| 1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구지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|
| 2.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| 2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|
| 제48조(수익자 등)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·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·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③ 집합투자업자 ·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정 그 밖의 영업소 ④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.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율 4.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. 투자설명서의 변경 6. 집합투자업자의 합병, 분할, 분할합병 또는 영업 또는 영업의 양도 · 양수 7.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잘못된 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 |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·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·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본점과 지정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.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율 4.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. 투자설명서의 변경 6. 집합투자업자의 합병, 분할합병 또는 영업 또는 영업의 양도 · 양수 7.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잘못된 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 |

| | | |
|--------------|--|---|
| |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| 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.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. 다만,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(모집)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. 9.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. 다만,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(모집)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. 10.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교부할 수 있다. |
| 부칙 | 신설 | 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. (집합투자업자의 사명변경 및 령개정 반영) |
| 2010. 11. 01 | 36조 (운용제한)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. 1. ~ 3. 생략 4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. ~ 6. 생략 |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. 1. ~ 3. 생략 4.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. ~ 6. 생략 |
| 제38조 (투자신탁보) | ① ~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| ① ~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재산의 |

| | | |
|----|---|---|
| 수) | 평균 잔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| 평균 잔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|
| 부칙 | 신설 | 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. (투자신탁 보수 변경) |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| 변경일자 | 변경사유 | 성명 |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³⁾ | 협회등록번호 |
|------------|------|-----|--|------------|
| 2011.03.02 | 말소 | 사봉하 | - 2001년 2월 Columbia Univ. 통계학 석사 - 2001년 2월 삼성생명 주식운용 - 2002년 4월 삼성투신 운용 LT 주식 1팀 운용역 - 2003년 1월 ~ 現 삼성투신운용 ETF 운용팀 | 2109000726 |
| 2011.03.02 | 신규 | 김남기 | - 2003년 7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- 2003년 7월 삼성자산운용 신탁회계팀 - 2004년 11월 채권2팀 - 2006년 7월 채권1팀 - 2007년 11월 ~ 現 ETF 운용팀 | 2109001159 |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·해임에 관한 사항

| 변경전 | | | | 변경일 | 변경후 | | | |
|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회계감사인명 | 계약기간 | 감사보수 | 계약방법 | | 회계감사인명 | 계약기간 | 감사보수 | 계약방법 |
| 안진회계법인 | 1년 | 165만원 | 서면계약 | - | - | - | - | - |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- 부합함

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인지 여부
- 적정함

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-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 - 공정함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 - 적정함
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 -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 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